

第245回国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5號  
(臨時會)

國會事務處

日時 2004年3月2日(火)  
場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번안

審査된案件

-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번안 ..... 1

(17시09분 개의)

○委員長 李在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田春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李在五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사실상 16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이고 정개특위의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오늘은 모든 것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의결된 안건 중에서도 부득이하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오늘은 빠뜨리지 말고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해야 하는 만큼 여러 위원들께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천정배 위원 나오셔서 공직선거법개정안 번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 위원 천정배입니다.

제245회 국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004년 2월 9일 의결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정수를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지역구는 243석, 그리고 전국구 56석, 총 299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국회의원 지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등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분구 및 통폐합 조정을 하고, 이 법 시행 후 분구 및 통폐합 조정된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10일 이내에 공직을 사직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는 후보자의 여론 지지율을 당초 100분의 10 이상으로 의결했습니다마는 이것을 100분의 5 이상으로 내려서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토론회에 더 많은 후보자들의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번안

(17시12분)

○委員長 李在五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번안을 상정합니다.

공직선거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9일 제3차 회의에서 4당 합의하에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원 정수와 선거구 구역표를 추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在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별표 1에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구역표가 별첨으로 붙여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세히 열독하시고 토론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學元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學元 委員 그동안 정치개혁특위, 또 정치개혁특위 안 선거법소위에서 4당 간의 오랜 협의 끝에 이와 같은 안이 만들어진 점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경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옥에 티처럼 이 법을 만드는 마지막 점에 있어서 위헌·위법적인 부분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분명히 잘못을 밝히고, 이 점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저의 법률적인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전체 국민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수로 나눈 그 평균 인구수의  $\pm 5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 대 1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선거구를 획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군·구의 일부를 떼어서 다른 데에 옮겨서 지역구 획정을 한다고 하면 게리맨더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공직선거법 제25조1항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회 본회의에서의 결정에 의해서 하한 10만 5000, 하한 31만 5000으로 하되 하한 10만 5000은 고정으로 하고, 상한 31만 5000은 헌법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약간 유동적으로 하되 제주도에 대해서 의석수를 가능하면 3석으로 하는 방향으로 권고하는 안을 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주도를 3석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헌법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5조1항에 명백하게 위반되기 때문에 이를 획정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주도에 관해서 2석으로 줄여 가지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합치되고 공직선거법 제25조1항에 합

치되는 내용으로 해서 선거구획정안을 짜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를 무시하고 제주도를 세 선거구로 유지하는 방안을 그동안 누차 연구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현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검토해 왔으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3 대 1 범위를 명백하게 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여겨져서 이 안을 피해서 결국은 제주시의 일부동을 떼어서 북제주군에 붙여서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된 대로 공직선거법 제21조1항에 ‘각 시·도에 최소 3석 이상’ 주는 단서규정을 넣고 제25조1항의 시·군·구의 일부를 떼는 예외를 제21조1항의 경우에는 부득이 인정하도록 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게리맨더링이고, 이와 같은 법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5조1항을 둔 취지는 제가 여기서 누누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한 시·군·구의 일부를 떼어서 다른 선거구에 합치는 방법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전국에 있는 선거구를 제대로 획정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가령 일례를 들어서 지금 여주·이천이 합쳐졌습니다. 여주가 불과 몇천명 모자라서 그 배가 되는 이천하고 합쳐졌는데 이천의 일부를 떼어서 여주에 합쳐진다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되지 않는 항변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완주군을 김제하고 합치도록 되어 있는데 완산구의 일부를 떼어서 완주군과 해 달라는 요청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앞으로 선거구 획정은 도저히 유지될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을 하면서 특별히 광역시·도에는 예외를 두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때 ‘이와 같은 지역대표성 등 모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인구 3 대 1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이미 이와 같은 지역대표성을 다 검토했습니다. 그 검토한 속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했고 또 제25조1항에 맞춰서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25조1항을 굳이 고치

는 것은 이런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 재판소의 근본취지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와 같은 위법적인 단서규정을 두어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선거구획정 위원회에서 획정을 하지 않고 우리 국회에서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24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단서규정대로 선거구를 획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도저히 이와 같은 위법한 획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획정하려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을 바꾸어 가지고, 이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제24조를 위반해 가면서 이와 같은 선거구를 획정하려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 이와 같은 전례가 생긴다면, 게리맨더링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이런 예외가 계속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헌정사에 있어서 악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저는 분명히 제주의 의원님들이나 제주시민들을 사랑합니다. 또 제가 일부러 한 선거구를 줄이려고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법이란 것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저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첨언하건대 그동안 공직선거법에 관해서는 만장일치의 합의제로 통과시켜 온 것이 지금까지의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당과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게 개정되는 것이라면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위헌이면서 위법이고 부당한 개정안을 내는 것에는 제가 찬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서 시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위원장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원희룡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희룡 위원 저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번안에 나와 있는 텔레비전 방송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번안에 보면, 텔레비전 방송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을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 그다음 직전 선거에서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100분의 10 이상 지지율을 얻은 후보자 중에서 여론조사 지지율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낮추는 번안이 올라와 있는데, 일단 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은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후보자 간의 합동연설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후보 간의 연설회나 정견 발표를 통해서 후보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텔레비전 방송에 의한 대담·토론회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을 때에는 위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미 모든 후보자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다만 텔레비전 토론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5인 이하일 경우에는 1개 단위로 대담·토론회를 하고, 5인이 넘어갈 경우에는 추천에 의해서 또는 후보자의 기호 순에 의해서 2개 또는 3개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간사 간 합의과정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되고 5%로 낮추는 것만 번안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경과과정이고요.

또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100분의 5로 낮췄다고 하더라도 아예 여론조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100분의 5 미만인 후보자들의 경우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는, 비교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제안하는 대로 번안내용을 다시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법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준비해 왔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요지대로 후보자들의 직전 선거에서의 득표율이라든지 여론조사의 지지율 또는 정당 추천 여부 이런 요건을 두지 아니하고 등록된 후보자들 전원에게 텔레비전 방송 대담·토론회에 초청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다만 5인을 넘는 경우에는 기호 순에 따라 후보자를 나눠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 추천 또는 유력 후보자들 간의 집중된 토론회와, 그다음 비록 차별되기는 하지만 무소속의 군소 후보들의 기회 자체는 봉쇄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역시 제가 간사 간 협의에서 검토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립니다.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 개정안 제60조의3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 2호에 보면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교부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120일 전부터 허용되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의 과열, 또는 지금 명함을 직접 교부하는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서 남용 또는 선거 과열로 가는 극단적인 경우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역시 안을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구내라든지 백화점 구내라든지 아니면 종교시설에서 예배 직후에 일렬로 나오는 다수인에 대하여 연속해서 명함을 교부하는 행위 등의 극단적인 경우는 한정적으로 예시해서 제한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조문을 준비해 본 바에 의하면 ‘명함 교부행위를 허용하는데, 다만 지하철역 구내라든지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한 공개된 장소에서 주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명함을 직접 교부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제한하고, 애매하거나 아니면 중앙선거위에서 규칙으로 한정적으로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허용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난번에 제가 여성전용선거구제와 석패율제도에 관해서 법안을 성안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여성전용선거구제가 위헌 논란을 겪으면서 결국 채택되지 아니하는 과정에서 석패율제도까지 별다른 논의 없이 증발되고 말았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석패율제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제안드렸던 석패율제도, 지금 법문 작업은 모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지역 편중구도를 시정할 수 있고, 사표로 사장되는 것을 의식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정당들이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 여부는 정당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석패율제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심의해서 채택 여부를 심사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각 당 간사님들은 지금 위원님들이 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정리해 두셨다가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릴 때 말씀해 주시고, 일단은 제안을 전부 들겠습니다. 듣고 하나하나 토론하겠습니다.

유시민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유시민 위원**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논의했던 문제인데요, 다만 약간의 새로운 상황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으시고, 개정안 관련 조항을 밀어붙이셨던 위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를 우선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새 선거법에 대한 의견서를 보낸 것 중에 선거 연령 문제하고 인터넷실명제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 연령 문제는 각 정파 사이에 이해관계가 조금씩 엇갈리고 얽혀 있기 때문에 민감하긴 합니다. 지금 20세인 민법상 성인규정을 거의 유일한 논리적 근거로 들어서 20세로 유지하는 것이 참정권의 침해라 불리울 소지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우리가 새로 이번 선거법에 신설한 인터넷실명제 문제는 이미 인터넷 언론사와 관련 단체들이 전부 불복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율적인·자발적인 실명제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이미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온 요청인 만큼, 특히 인터넷실명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바와 같이 처벌규정이 없는 ‘선언적 조항’으로 전환해 주시는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어차피 실무적인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이번 선거에서는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한 문제를 괜히 이렇게 해서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특히 원희룡 위원님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자민련·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金學元 위원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한 가지 사실관계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서 4개 항으로 되어 있는 선거구획정기준안을 통과시킬 때 제가 반대토론을 하면서 “4항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위헌 아니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절대 제주도 의석이 3석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여 선거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갔다가 ‘위법 아니면 위헌이니까 못 한다’ 이렇게 해서 본회의 의결 자체가 우습게 되어 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와서 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그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을 게리맨더링이라고 욕한다면 지금 인구 10만 5000 겨우 넘고 10만 육칠천 밑으로 되는 영남과 호남의 작은 선거구를 손대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하한선은 고정하고 상한선은 유동화시킨다’는 이 괴상한 주장을 한 것은 게리맨더링이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얼굴에 침 뱉는 얘기는 좀 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설치하기로 해서 4당 간사회의에서 합의된 것을 보면 각 시·도별로 최소 3인으로 하도록 제21조에 넣고, 그리고 제25조제1항의 임의적인 행정구역 분할을 막기 위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 조항과 관련해서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것을, 말하자면 읍·면·동이나 시·군·구를 마음대로 찢어 붙이는 일반화시킨 원칙으로 선거법에 이것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제주를 3개 의석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관철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피하고, 회피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 간사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제주시의 1개 동을 북제주군에 붙여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심규철 위원님!

이쪽 줄 한 번, 저쪽 줄 한 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규철 위원 심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국회의원 정수 문제입니다.

제가 그동안 정개특위를 빠진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299인으로 하기로 했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갑자기 299인으로 합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당에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합의된 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정수 문제 가지고 논의된 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역구 비례대표 동결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구는 인구 상한선·하한선 여기에 맞추다 보면 결국 자연적인 증가분이 없을 수 없다 해 가지고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거쳐서 불가피하게 한 십여 석을 늘리기로 된 것이지요. 거기까지는 불가피한 일로 다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6대 국회를 거치면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면 사실 국회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많은 바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없을 줄 압니다.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서 국회가 제 구실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각 위원님들 소관 상임위마다 있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수가 부족해서 많은 바 일을 다 못한다는 느낌을 가져 본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무엇 하겠다는 것인지,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지지한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의욕에서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국회가 지금까지 국회의원 정수를 동결하는 방침을 세우고 정개특위를 운영해 오다가 사실상 16대 국회 마지막인 오늘 슬그머니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늘렸다…… 여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대단히 크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지역구는 몇 석 늘어났습니다마는 그것을 반영하는 선에서 비례대표의원

수도 동결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289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말씀 안 하신 분…… 黃 위원님!

○**黃昌柱 委員** 黃昌柱 위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49조제5항을 보면 벌금 이상의 형을 범죄경력으로, 실효된 형이라도 전과기록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데 대해서 문제 조항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 본인의 과오가 아닌, 직업상과 관련되어서 부득이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이 억울하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범죄자가, 이와 유사한 분들이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이 제49조제5항 “벌금형 이상”을 “금고형 이상”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어서 정식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또 다른 제안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나온 제안을 보충설명하시는 분은 기회를 조금 이따 드리고, 일단 새로운 제안을 전부 먼저 받겠습니다.

우선 張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張誠源 委員** 저의 새 제안은 예비후보자가 도로변이라든지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또는 점포 그 밖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서 자기의 학력·경력·활동상황 등 자기소개에 관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는 것입니다.

안 제60조의 제3호는 이것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조항입니다마는 제3호를 신설해서 이렇게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정이유를 내놓은 이유는 예비후보자의 자기소개에 관해서 말을 터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입니다. 이 원안을 보면 국회의원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의정보고를 금지하고 예비후보자도 명함 배부, 이메일 발송, 유인물 배포 등 서면에 의한 자기소개만을 허용할 뿐 말에 의한 자기소개 등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되면 현역 의원과 신인 모두 말을 묶어버리는 경우가 되어서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현역 의원과 신인 모두 선거기간 개시일까지 이 규정을 그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거기간 개시일까지 말을 참고 있을 수 있겠는가, 아마 모두가 사실상의 선거법 위반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둘째는 현역의원, 예비후보자 양측 모두 공공연히 사람들 앞에서 말로 설득할 경우 적발되기 쉽기 때문에 적발이 안 되는 음성적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점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금품선거와 흑색선전이 확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셋째는 선거법 개정으로 새로운 지역이 지역구에 편입되는 선거구, 특히 농어촌 선거구에서는 정치개혁특위 안과 같이 서면에 의한 자기소개만으로는 충분한 자기소개를 할 수가 없고 14일에 불과한 선거기간 중에 그 넓은 지역에서 자기소개를 하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정견을 피력할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후보자를 잘 알고 투표해야 한다는 선거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예비후보자에게 제한적이거나 말을 터주자는 것입니다. 즉, 현역 의원과 신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모든 예비후보자에게 다중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를 방문해서 학력·경력·활동상황 등 자기소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치개혁특위 안에 말을 터주는 방안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확정기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분명하게 금지해서 과열을 막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현역 의원과 신인 모두 개정선거법을 충실히 지킬 수가 있고 금품 등 음성적 방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돈을 묶으려면 말을 터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실증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예비후보자 일반 즉, 현역 의원과 신인 모두에게 똑같이 제한적으로 말을 터주기 위해서 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정장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장선 위원** 새로운 제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취지가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같은 경우를 다른 시·도와 똑같이 적용하면 지방의회의 구성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하한선을 보장해 줌으로써 지방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3석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제93조를 보면 우리가 이번에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상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등을 통해서도…… 광고는 사실상 지역에서 후원회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 그 행사에 따라서 유인물을 만들게 되는데 그 유인물에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사실상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법인의 대표나 임원인 사람이 그 이름만 게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기부행위의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팸플릿을 제작하는데 거기에 대표나 임원 자격만 제시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지금 이런 편법을 이용해서 엄청난 후원을 해서 사실상 기부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90일 전으로 되어 있는데 상시 기부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1년 전으로 하고 별칙은 기존의 별칙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金學元 위원 말씀하십시오.

○金學元 委員 아까 유시민 위원께서 저의 말씀에 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가 본회의에서 제주도에 관해서는 3석을 유지하도록 권고한다고 하는 안에 찬성해 놓고 왜 여기에 와서는 그것을 반대하느냐는 취지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당초부터 제주도에 관해서 3석을 만드는 것은 명백하게 제25조제1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4당 총무회담 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소위 간사회의 때도

누차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때 열린우리당에서 낸 안은 현재 지역구 227명을 동결하는 안이었고 민주당에서 제출한 안은 인구 하한 10만 5000, 상한 31만 5000으로 하되 인구 하한은 10만 5000을 고정으로 하고 31만 5000은 헌법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해 달라는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따를 때에는 국회의원 수를 15명 정도만 늘리면서 선거구에 큰 변동이 없는 범위로 조정될 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열린우리당에서 지역구 227명을 고수하는 경우에는 전 227개 선거구 중에서 80~100개 의석의 변화가 있게 되어서 지금 선거를 2개월 앞둔 상황에서 선거구에 엄청난 대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기가 상당히 부당하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현재 227석으로 하느냐 아니면 인구 상·하한선을 10만 5000과 31만 5000으로 하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하한 10만 5000, 상한 31만 5000 안에다가 세 번째 항을 끼워 붙여서 제주도는 3석을 유지한다는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안을 넣는다고 하면 저는 부득이 이 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나라당 총무와 민주당 총무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권고한다”로 해서 법적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이 안에 찬성해 달라고 해서 그 안에 대해서 찬성했고, 결과적으로 그 권고한다는 규정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해석해 볼 때 불가능한 것이다 해서 국회의 그와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 위원회에서는 제주도를 3석으로 확정해 가지고 보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유시민 위원이야말로, 당시 본회의에서 제주도를 3석으로 유지하는 것은 위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던 당사자가 이제 와서는 제주도를 3석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선거구 획정에 관해서 시·군·구의 일부를 떼어서 다른 시·군·구에 합치지 못한다는 규정이 일반적인 규정이 아니고, 특수한 광역시·도에 있어서 최소한 3석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특수적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국 시·군·구의 일부를 떼어서 다른 시·군·구에 합치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용한다면 게리맨더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제주도의 경우 시·군·구의 일부를 떼어서 다른 데에 붙여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허용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여주·이천의 경우는 일부를 떼어서 다른 데를 획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기타 다른 곳에서도 떼어내지 못하도록 해서 특별히 어떤 한 군데만 혜택적으로 불균등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기존 공직선거법 중에서 이렇게 떼어 붙이도록 하는 네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네 가지 예외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해운대·기장의 경우는 기장 하나만 떼어 놓고 보면 인구 6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구 하한선이 미달이 되고 해운대나 옆에 있는 금정을 합하게 되면 상한선을 훨씬 넘는 경우가 되어서 위헌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제25조제1항을 헌법적인 것과 융화·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4개의 특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시 말고 북제주와 남제주를 합할 경우에는 상한선 범위 내에 깨끗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제주도를 선거구 획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헌·위법의 경우를 범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위헌설관식으로, 또 그 지역을 특정하게 설관하는 식으로 법을 만드는 것은 짜깁기가 되고 게리맨더링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정의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의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회의가 같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회의 진행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묻고 싶은데요. 의원 정수에 대해서도 발언해도 됩니까 아니면 그것은 나중에 해야 됩니까?

○**委員長 李在五** 발언하십시오.

○**정의화 위원** 우선 방금 존경하는 金學元 위원님께서 제주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주도의 의원수는 3석으로 현재도 3석입니다. 제 기억에는 15대·16대 계속해서 3석이었는데 이 3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제안한 말씀 올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그 모양새가 둥글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5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도의 특수성으로 봤을 때 사실 제주도는 저희들도 여러 번 가 보았지만 지역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중간에 한라산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적인 정서의 차이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또 우리나라가 양원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광역시·도의 국민들의 의사를, 그 대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또 하나는 55만 명을 단순 산술로 해서 3으로 나누었을 때 약 19만·20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인구 하한선을 10만 5000으로 본다면 제주도는 능히 3석을 유지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 그동안 역사적으로도 제주도민들은 가슴에 많은 아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간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3석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뚝으로써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아우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석으로 가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의원 정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개특위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각 당의 주장이 많이 요동을 쳤다고나 할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에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당의 합의정신에 따라서, 또 당론에 따라서 지역구 15인 증원에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제가 알고 있는 대의민주주의국가에서는 직접선거로 국민이 자기의 선량을 뽑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역구 출신 여성들의 국회 진출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창피할 정도로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출신



여성들의 국회 진출이 선진국 수준이 될 때까지 여성들의 국회 진출을 위해서 문호를 보다 늘리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마음으로 깊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비례대표를 현재와 같이 46명으로 그대로 두되, 그 비례대표의 3분의 1을 여성으로 대치하면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안으로서 이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원희룡 위원 말씀하세요.

○원희룡 위원 지금 제주도의 의원 정수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물론 인구비례에 따른 원칙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구비례원칙뿐만 아니라 지역대표의 원칙도 가미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선거구제이고 제주도가 55만 정도의 인구, 대한민국 국민총생산의 한 1% 정도가 되는 단위로서 광역자치단체로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또 지방의회 구성의 경우에도 행정단위에 맞춰서 최소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모가 못 될 때에는 최소한의 의원수를 보장하는 선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빗대어서 다른 선거구의 경우에도 이게 무제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제주도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간과하는 논리라고 봅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로서 도민들을 대표하는 최소 숫자로서 3인을 규정한다는 정신을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을 해서 지금 제안된 대로 제주도의 의원 정수를 3인으로 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다른 것들은 이따 토론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유시민 위원님께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해서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거법소위에서 수차례 했던 논쟁 그리고 그 속기록을 다시 옮기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선언규정으로서의 인터넷실명제만 규정하고 처벌규정을 없애자고 했는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처벌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터넷실명

제가 의무가 되고 의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선언적인 의무규정만 두자고 하셨는데 인터넷실명제 그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처벌규정으로 강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거법소위 때 수차례 논의했지만 인터넷실명제를 법에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이상 인터넷가명제로 전락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가 행정자치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만 추출해서 그것을 고정시켜 놓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거나 아니면 해킹에 노출되지 않는 기술적인 방식까지 모두 검토를 했고 여기에 따른 예산, 관련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까지 모두 검토를 해 놓고서 지금 와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유시민 위원님께서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하는 것처럼 입장을 취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아함과 함께 유감을 표시합니다.

두 번째로 선거법소위의 12차에 걸친 토론과정에서 유시민 위원님께서 인터넷실명제 자체를 반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에 전자서명에 의한 인터넷실명제가 논의 주제로 던져졌을 때 제가 ‘전자서명에 의한 것은 과도하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했고 그래서 인터넷실명제라는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유시민 위원님과 함께 건설적인 토론을 주고받으면서 저희가 도달했던 방안이 현재 선거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방안입니다.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시민 위원님께서 선거법소위 6차 회의 때는 회원 가입절차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아주 장황할 정도로 설명까지 하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7차 회의 때도 대안을 여러 가지로 대가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자는 주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인터넷언론사들이 인터넷실명제의 도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인터넷실명인증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인터넷언론사들은 과거에 선관

위와의 공개적인 토론자리에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 인터넷언론사의 지위를 보장해 준다면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해서 정간법상의 언론사에 해당하는 지위와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하는 직접적인 논리가 될 수는 없다고 보고, 또한 선거법소위의 논의과정에서 저희는 이런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인터넷상에 정치광고를 허용해 주면 인터넷실명제를 수용하겠다’ 이런 변형된 제안을 받은 바 있지만 역시 인터넷 정치광고의 허용여부는 인터넷실명제의 도입여부와는 연계될 사안 또는 교환조건으로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부 오해 또는 설명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李在五**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것 외에 새로운 제안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확인합시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 위원** 오늘은 정개특위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또 16대 국회 전체로도 거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6대 국회 막바지에 훌륭한 정치개혁법안을 만들게 된 데 대해서 매우 큰 보람을 느끼고 또 국회의원으로 국민들에게도 그동안 많은 잘못과 부족함이 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번의 정치개혁법안에 관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참으로 혁명적인 개혁안을 만들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치자금법에 관해서 이번에 매우 훌륭한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 말만 하더라도 정치자금 개혁에 관해서 대체로 시민단체에서 내놓았던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 방안, 즉 1회에 100만 원, 연중 500만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받을 때 실명을 밝히자 이런 정도만 달성하면 매우 큰 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나아가서 어찌 보면 너무 이상적인 안으로 개혁을 했지 않나 싶을 정도로 혁명적인 개혁안을 이루었습니다. 그 점을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개정 과정에서 개인 이외에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저는 그 점에 관해서도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훌륭한 개혁안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사용자단체라든가 기업의 후원을 금지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만큼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히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만은 다른 단체와는 구별해서 특별히 보장해 주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고 또 우리나라 입법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어도 정치자금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는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지금 이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다르게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方鎬 委員**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까.

○**委員長 李在五** 말씀하십시오.

○**李方鎬 委員** 정개특위가 수개월 동안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발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 법안을 성안하는 데 주역으로서 자기 의견들을 개진하고 합의를 해 온 분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또 자기 개인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당 간사 간에 합의한 사항을 존중해서 다소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서로 합의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제주도 의석수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인정할 때

군이 1석을 더 늘리는 자체가 국민적인 정서에 크게 반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울릉도 같은 데도 인구수로 보면 군의원이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최소 6명으로 운영을 하듯이 한 도에 국회의원 정수 3명을 인정하는 자체가 그렇게 크게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도 3당 간에 합의된 사항이니만큼 존중해서 위원장님께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도 의원 정수 문제, 두 번째 후보자의 방송토론회 참여기준 문제, 세 번째 예비후보자의 무차별 불특정다수에 대한 명함교부 문제, 그다음에 석패율 문제, 다음에 선거연령과 인터넷실명제 문제, 다음 국회의원 정수를 289명으로 하자는 문제, 그리고 벌금 이상을 선거공보에 기재해서 유권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금고 이상으로 하자는 문제, 그리고 기업주나 기업의 임원이 입후보를 했을 때 그 기업명의로 광고를 내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 그다음에 예비후보자의 선전, 말을 푸는 문제, 다음 노동조합에 한해서는 정치자금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문제 등이 새롭게 제기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찬반토론을 해서 합의를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제안된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4당 간사 간에 합의의 기회를 주고 합의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간사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 전체회의에서는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도저히 간사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은 표결로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제기된 문제에 대한 마지막 간사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20시3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在五**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의견을 비롯해서 특별한 사의에 대해서 저녁 시간에 간사들 간에 새로 의견을 절충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간사들은 간사들이 합의한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지금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제안하신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표결을 해서라도 꼭 결정해 달라’ 이런 안이 있을 수가 있고 ‘나는 의견개진을 충분히 했으니까 표결 없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정리해서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천정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말씀하십시오.

○**천정배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정개특위에서 다루는 법은,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특위에서 토론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교섭단체 간 협상과 타협의 산물인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각 위원께서 제기한 문제들은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각 당이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고 또 어찌 보면 살얼음을 딛는 듯이 겨우겨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 와서 마지막 순간에, 더구나 오늘이 정개특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이 넘어가면 선거 전에 새롭게 정개특위를 연장하기도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개별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일일이 표결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각 당끼리 어렵게 합의해 놓은 부분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개특위는 합의에 의해서 운영하고 절대로 표결처리나 일방적인 처리는 없다고 처음부터 위원장께서 약속하셨던 정신에 어긋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건설적인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의견들은 차후 17대 국회 이후에서의 연구 내지는 토론 과정으로 남겨두고, 오늘 낸 번안은 사실 지난번 정개특위에서 이미 의결되었지만 이번에는 의원 정수문제 때문에 새롭게 번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의원 정수와 선거구 확정문제로 새로 열리게 된 오늘의 회의에서 과거에 논의되었던 새로운 안을 다시 표결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간사 접촉에서는 대체로 원안을 그대로 합

의 처리하든지 아니면 합의가 안 된다면 표결을 하더라도 원안 전체를 놓고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표결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해 주셔서 위원장께서는 기술적인 것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각 당에서 논의를 거치고 합의했던 사항을 존중해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결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在五** 金聖順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聖順 委員** 그동안 간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하나하나 합의·절충·조정하느라 애쓰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모시고 첫 시간에 제발 좀 민주적 절차에 충실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는데 민주적 절차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도 해도 안 되면 결국 최후, 오늘이 최후나 마찬가지인데요. 정 합의가 안 된 것은 표결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요.

만일 간사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한다면 이 전체회의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서 안 된 것은 당연히 표결처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도 아까 우선 하나 하나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표결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항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표결처리해 주십시오. 그것이 민주적 절차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내용을 보면 잘 된 것도 많이 있지만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간사회의에서 합의되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표결처리합니다.

○**委員長 李在五** 제가 정회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새롭게 제기된 안들을 정리해 드렸고 이 안들을 저녁시간 동안에 간사간에 합의가 되는 것은 되는 것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대로 속개 이후에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박종희 위원!

○**박종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개특위 위원을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만 참 지루하고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위원회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계속 의사진행발언을 주면 의사진행이 안 됩니다. 의사진행발언도 주지 마십

시오.

그리고 막바지 벼랑 끝까지 몰려왔는데 우리가 이 순간에 간사 간 합의가 되어서 전체위원회가 동의한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는 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지금 두 분 위원 빼놓고는 전부와 계시니까 여기에서 표결을 하고 또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면 정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해서 다시 표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넘기면 정말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정개특위 위원으로서의 소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五**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金學元 위원님!

○**金學元 委員** 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소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면서 토론을 해서 여야 간에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체회의에서 과거의 전례를 존중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위헌·위법 문제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약간씩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당의 입장으로 보아서 다소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서 일체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절대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위법·위헌적인 문제, 특히 선거법에 있어서 게리맨더링 요소는 절대로 역사적인 흔적으로 남겨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생각에서 비록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그리고 민주당이나 3당에서 절대 다수의 숫자로 찬동을 했지만 이와 같은 게리맨더링에 의한 의석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법률적인 소신이고 양심입니다. 제가 법률적인 직업에 종사해온 지금까지도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는……

여기 법률을 전공했던 많은 위원들께서도 저에게 동조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 합의해 왔다가 막바지에 가서 편법에 의해서 의원수를 제주에 특례적으로 하나를 두는 것은

역사적으로 짊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본 위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머지에 관해서는 제가 다 찬동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다른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 수정안을 제출하려면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 말고 다른 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당이 모두 제주에 특례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1명의 위원에게서도 동조를 얻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는 수정동의안을 낼 수가 없고, 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다른 위원들께서 시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표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대로 위원장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五** 유시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유시민 위원** 제가 아까 선거연령 문제나 인터넷실명제 문제에 대해서 다소 과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원 위원님께서 길게 말씀을 주셨는데 새롭게 표결하자는 의미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다 표결처리했던 사안입니다. 다만 그런 인권위원회 쪽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록을 위해서 제가 발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굳이 표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金學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하시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서 더……

○**委員長 李在五** 그러면 지금 유시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꼭 표결을 요하지 않는 안은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때 발언하신 위원들께서 그것은 꼭 표결할 필요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거방송토론회에 대해서 원희룡 위원이 말씀하신 안이 있습니다.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고 내용의 핵심의 가부만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위원**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TV 대담 토론의 초청대상이 현재 법안은 정당 추천, 직전 선거의 100분의 10 득표, 여론조사에서 100분의 10 지지율 획득, 이 대상자들로만 한정해서 초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오전에 간사회사에서 ‘여론조사에서 100분의 5를 획득한 후보까지는 초청을 하자’ 이렇게까지 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가도 참가하지 못하는 후보자들은 합동연설이 없으니까 정견발표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헌인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자격요건을 철폐하고 모든 후보자들에게 주되 복수의 후보들이 난립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명까지는 한 단위의 토론으로 조직하고 5명이 넘을 경우에는 후보의 기호순서대로 그룹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법조문을 이미 다 만들어서 아까 제출한 바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이 안의 번안은 ‘100분의 10 이상’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수정해서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희룡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보다 더 완화해서 후보의 수가 많을 경우에 유력 후보와 군소 후보군을 나누어서 토론에 응하도록 하자는 안입니다. 그러면 원희룡 위원이 말씀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 표결)

다음에 번안인 후보자의 여론지지율을 ‘100분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수정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 표결)

지금 ‘100분의 5’를 표결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지금 하나에 대해 찬반 묻고, 하나에 대해 찬반 묻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앉아 주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원희룡 위원 안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비후보자의 방송 대담토론을 후보자가 많을 경우에 유력 후보군과 군소 후보군을 나누어서 전부 토론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입니다.

○**천정배 위원** 유력 후보군과 군소 후보군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지요?

○**원희룡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후보자가 아니고 후보 등록한 이후에 TV 토론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번안에 의하면 여론조사 지지율 100분의 5

까지 얻은 후보자만 제한적으로 초청되고 나머지는 원천적으로 TV 토론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때에 위헌의 소지가 제기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것이 이병석 위원님이 제안하시고 안 나오셔서 제가 대신 계속 한 것인데, 그래서 자격제한 없이 합동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다만 인원이 5명이 넘어가면 무차별로 섞이는 문제가 있으니까 기호순으로, 그러니까 의석수대로 주요정당의 후보가 최대 5명까지 토론하고, 6명~7명일 때는 이것을 두 그룹으로 쪼개서 효율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은 가하되 기회는 모두 주자는 취지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 표결)

앞아 주십시오.

반대하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 표결)

이것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후보자의 명함 교부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지하철역 등에서 무차별 집단적으로 교부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 표결)

앞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 표결)

이것은 찬성, 제한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천정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李方鎬 委員** 지나갑시다.

○**委員長 李在五** 제가 중요한 것을 알아서 의사진행에 찬반토론 없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천정배 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하십시오.

○**천정배 위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다음에 석패율제 도입하는 문제를 표결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그동안 여성광역구제 등과 더불어서 각 당이 매우 신중하게, 겨우 겨우 어떤 합의를 이뤘다가 여성광역구제가 무산되고 날아가는 바람에…… 오늘도 물론 석패율을 주장하는 교섭단체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굳이 도입할 것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천정배 위원** 그런데 당의 입장들이 매우 중요하게 반영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표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앞에도 그렇습니다만 예비 후보자 명함 교부 문제에 대해서 정말 표결하시려면 딱 하나 놓고 그에 대해 찬반토론을 한 차례씩이라도 하게 해서 표결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석패율제 도입 문제를 표결하시려면 잠깐 정회를 해 주시고, 당에서 협의한 다음에……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해야지, 이 자체로 수로 밀어붙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委員長 李在五** 아닙니다. 저한테 맡겨 놓으십시오. 제가 생각이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의원 정수 문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여기 와서 다시 뒤집힌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委員長 李在五**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의 두 개는 오늘 처음 나온 문제이고, 이것은 그간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하신 원희룡 위원께서 이것도 투표를 원하십니까?

○**원희룡 위원** 예, 그렇습니다. 토론은 지난번에 충분히 됐습니다. 여야 합의까지 다 됐던 사항입니다.

○**김성호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오.

○**원희룡 위원** 아니, 찬반토론을 할 거면 같이 주시고요, 찬반토론을 생략할 거면 다 생략해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 위원장님, 다른 사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은 저희들이 양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다르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석패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개개인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당의 입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은 저희들이 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알겠습니다. 이것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 제주도를 3석으로 허용하자는 안입니다.

이것은 金學元 위원께서 강력하게 표결을 주장

하셨기 때문에 표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3석을 허용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 표결)

앉아 주십시오.

반대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 표결)

앉아 주십시오.

제주도는 3석 예외규정을 두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정수 289인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번안은 299인입니다.

○천정배 위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문제도 우선 뒤로 미뤄 놓으세요.

○委員長 李在五 알겠습니다. 이것 받아들이겠습니다. 뒤로 미루겠습니다.

등록한 후보자에 대해서 선관위가 벌금형 이상의 모든 전과사실을 유권자들에게 통보하자는 안에 대해서, 이 벌금형을 금고형 이상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금고형 이상으로 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 표결)

○천정배 위원 이것은 완전한 개악이에요.

○委員長 李在五 천 위원, 표결할 때는……

○유시민 위원 아니, 전체회의에서 다 합의했던 사항을 다시……

○委員長 李在五 앉아 주십시오.

반대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 표결)

앉아 주십시오.

○유시민 위원 이것은 절차상 말이 안 돼요. 아니, 전체회의에서 합의했던 것을 이런 식으로……

○委員長 李在五 유시민 위원, 진행에 협조해 주세요. 마지막 날입니다.

○유시민 위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지요. 이것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럼 아예 무기징역 이상으로 하시든가요!

○천정배 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의화 위원 국민한테 책임지고 설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내가 국민들한테 설명할게.

○委員長 李在五 그다음 張誠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표결해야 되겠습니까?

○張誠源 委員 예.

○委員長 李在五 다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張誠源 委員 그러니까 예비 후보자나 현역 국회의원이 명함을 나눠 줄 때 예를 들어서 간단한 학력, 경력, 자기소개를 할 수 있게 발언을 허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명함만 나눠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고려대학 나왔습니다’ 등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지요.

○委員長 李在五 그럼 찬성 일어서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 지금 명함에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표기할 때 이렇게 하자는 거지요?

○張誠源 委員 아니, 명함을 줄 때……

○김성호 위원 아니, 명함 뒤에다가 아예 명기 하자면서요.

○張誠源 委員 명함에도 넣고 말로도 하고……

○김성호 위원 명함에 넣는 것은 저는 찬성인데, 말로 하는 것은 저는……

○委員長 李在五 찬성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 표결)

앉아 주십시오.

반대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 표결)

앉아 주십시오.

이것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정장선 위원께서 제안하신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장선 위원 지금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법인이나 회사의 대표나 임직원들이 자기 이름을 넣지 않고 얼마든지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편법으로 많이 이용되어서 기부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나 회사에서 광고를 할 때 누군지를 대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편법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1년 전부터 이 자체를 후보자 또는 가족이 관계되어 있는 회사들도 못 하도록 규제하자는 안입니다.

○정의화 위원 뭘 못 한다고요?

○정장선 위원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하는 기업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행사마다 기업광고를 대표자 이름만 못 넣게, 그러니까 그 선거에 나오는 사람 이름만 안 넣으면 얼마든지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정의화 위원 그러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 기업에서 1주년이어서 기념 타월을 만든다……

○**정장선 위원** 아니, 통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속 후원을 많이 해 주고 광고를 내주는……

○**정의화 위원** 지역 행사에 광고라는 이름으로 후원은 못 한다?

○**정장선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편법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화 위원** 한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委員長 李在五** 요점은 이런 겁니다.

기업의 사장이나 임원이 출마를 하는데 그 기업이 광고를 한다 이겁니다. 현행법에는 이름만 안 쓰면 되니까…… 이것은 사실상 편법을 이용해서 선거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제한하자 이 이야기지요?

○**정장선 위원** 그러니까 광고를 받는 사람이나 주민들이 누가 하는지를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안 쓸 뿐이지 편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자,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심규철 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그것이 필요한 법인데, 이것을 법제화하려면……

○**정장선 위원** 제가 법조문 만든 것을 읽어 드릴게요.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입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광고할 수 없다……’

○**심규철 위원** 가족과 관계있다는 게 어느 범위까지 관계있다고 볼 것인가를 명문화해야지요. 가족의 범위를 명문화해야지요.

○**정장선 위원** 그것은 나중에 선관위에서 추후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심규철 위원** 되어 있어요? 예컨대 사촌 이내라든가 그런 게 되어 있어요?

○**정의화 위원** ‘지역구 행사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지요.

○**委員長 李在五** 잠깐요, 정리하십시오.

○**천정배 위원** 이렇게 진행된다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정장선 위원께서 제의한 발언의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행법도 통상적인 광고 이상의 것은 금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큰 회사의 임원 한 사람이 출마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출마했다는 이유로 전혀 광고를 못 하느냐? 우리나라에 거대 회사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하고의 한계를 어떻게 분명히 구분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 그러니까 현행 조문하고 새로 만들고자 하는 조문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그 문제를 검토한 연후에 표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예, 이것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천정배 위원께서 제안하신 단체기부 금지 관련해서 노동조합의 기부 금지 반대 부분을 수정자는 것인데 다시 한번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표결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의안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배 위원**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한다는 거지요.

○**원희룡 위원** 정치자금법인가요?

○**천정배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호 위원** 노동조합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겁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민노총이 민노당에 정치자금을……

○**천정배 위원** 아닙니다, 오늘은 선거법에 대한 번안이니깐 이 부분에 대한 표결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원희룡 위원** 정치자금법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알았어요. 이것은 제안하신 분이 표결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해야 하겠습니다.

○**원희룡 위원** 아까 사전에 위원장님께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 의제가 있습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는 이미 있는 조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하겠습니다.

제71조 ‘방송연설’에 보면 현행법은 ‘방송연설을 할 경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2회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다 쓰려면 각 후보들은 지상파 한 번, 유선방송 한 번 이렇게 배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개특위에서 통과시킨 안에는 지상파 1회 제한규정이 삭제되어 있어서 결국 지상파를 두 번을 다 쓰든지 유선방송을 두 번을 다 쓰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쳐져 있는 이 사항이 지난번 정개특위에서 마지막 의결할 때 실제로 선거기간에 지상파와 유선방송협회 간에 방송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상파를 1회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우리가 삭제했는데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수정 제안은 기존의 1회 제한규정을 다시 살리고, 이것을 살리게 되면 조문상에서는 제71조제5항 후단, 제6항 후단의 이 경우 이 경우 이하, 이 조항이 원래 제가 말씀드리는 제71조제1항3호의 단서규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작업은 별도로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핵심은 일단 지상파와 유선방송을 각 1회 이내에서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배분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제안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이나 농촌의 경우 환경이 완전히 다른데, 농촌의 경우에는 지상파로 두 번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유선방송 시장이 현행 제도와는 달리 모두 사장된다는 유선방송협회의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이 점을 심의해 달라고 제가 제의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것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이번에는 현행대로 하시고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번 내주도록…… 너무 새로운 것이라 찬반토론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원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원희룡 위원** 좋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러면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석패율 문제하고 의원 정수 문제인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사들 간에, 각 당에 의견을 다시 한번 조율할 시간을 드릴까요?

(「예,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在五** 어떻게 할까요? 바로 표결할까요, 시간을 좀 드릴까요?

○**천정배 위원** 표결은 안 됩니다. 이것은 표결이 아니라 원래 우리……

○**李方鎬 委員** 더 이상 토론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표결처리 합시다.

○**金學元 委員**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천정배 위원** 의원 정수와 석패율 문제는 그동안 각 당 간의 논의를 거쳐서 어렵사리 합의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결처리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金聖順 委員** 그럼 정개특위는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천정배 위원** 정개특위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에 관해서는 합의하는 것으로……

○**委員長 李在五** 아니, 다른 것은 다 표결해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각 당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어 온 것을 마지막 정개특위에서, 그동안 충분히 예고했던 건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진행이 어렵지요.

○**천정배 위원** 물론 좀 다르긴 하겠습니까마는 각 당의 간사가 단순히 자기 개인 의견을 가지고 합의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각 당의 간사가 각각의 당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당론을 정해서 왔던 사안입니다. 대표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표결했던 다른 것들은 우리 위원회 재량에 위임됐다고 볼 수 있는 사안들이지만, 석패율 문제와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각 당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합의해 오는 것인데 이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의회 운영 원리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이 돼서 여기서 표결처리 해서는 안 됩니다.

○**委員長 李在五** 의사진행방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말씀하십시오.

○**박종희 위원** 위원장님, 의원 정수 문제는 각 당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본회의에서……

○**천정배 위원** 왜 합의가 안 됐어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종희 위원** 아니,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정개특위 위원 개개인의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299명으로 하든 289명으로 하든 표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표결을 하고, 석패율제도는 조금 더 논의를 하든지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9시 15분인데 문안 정리하고 자구·체계 심사 거쳐서 본회의에 올리게 되면…… 오늘 넘어가면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책임을 다 지시겠습니까?

○**김성호 위원** 위원장님, 석패율제도는 안 돼요. 그것은 달라요.

○**천정배 위원** 지금 박종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박종희 위원이 속한 교섭단체 간사가 당을 대표해서 합의해서 내온 일입니다. 이것을 여기 와서 이렇게 뒤집으면 어떻게 합니까?

○**委員長 李在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석패율제도는 종전에 합의해 왔다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 정수 부분은 본회의에 또 수정안을 낼 기회가 있기 때문에 289명 안과 299명 안을 놓고 표결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대신 석패율 부분은 표결하지 않는 것을 원 위원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원희룡 위원** 양해가 잘 안 되고요, 표결 부처 주십시오.

○**천정배 위원** 오세훈 간사가 책임지세요.

○**委員長 李在五** 됐습니다.

그러면 석패율 부분은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정수 부분은 289명 안과 299명 안을 놓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9명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 표결)

앉으십시오.

289명에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 표결)

앉으십시오.

가부 동수는 부결입니다.

그러면 299명 안을……

○**천정배 위원** 299안은 원안에 있기 때문에 전체 표결할 때 넣으시면 됩니다. 아까 번안은 전체로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委員長 李在五** 아니……

○**천정배 위원** 그 말씀입니다. 전체 번안이 지금 29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안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在五** 그러니까 그건 번안을 놓고 표결해야지요.

○**천정배 위원** 그렇습니다. 번안 전체에 대해서 표결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면 되지요.

○**委員長 李在五** 자, 번안에 대해서, 299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천정배 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번안 전체를 표결해 주셔야 됩니다.

○**委員長 李在五** 번안 전체라는 게 내용이 두 가지 안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대로 따라 주세요.

299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천정배 위원** 아니, 그게 무슨 이야기지요? 번안 전체로 해야지……

○**유시민 위원** 번안은 끝까지 다 붙여서 한꺼번에 해야지……

○**천정배 위원** 그럼 이것도 부결되면 어찌시려고……

아니,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표결해서는 안 되지요.

○**박종희 위원** 어떻게 진행을 그런 식으로 야바위처럼 합니까? 표결을 했으면……

○**천정배 위원** 아니, 그럼 299명도 부결되면 273명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희 위원** 왜 그건 당당하게 표현을 못 합니까?

○**천정배 위원** 아니, 무슨 소리를 합니까? 오세훈 간사가 좀 말씀하세요. 간사회의에서 각 당까지 다 충분히 합의된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委員長 李在五** 아니, 이 번안을 표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 번안 전체를 해야지요, 번안 전체를. 각 간사 간에 합의해서 오늘 번안으로 제안한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在五** 천정배 위원님, 번안 전체를 표결할 경우 확정위원회에서 넘어온 지역구의 별표까지 그려 놓은 부분이 몽땅 부결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정배 위원** 그럼 합의처리 해야지요. 아니, 오히려 합의될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299만 지금 부결처리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委員長 李在五** 그러니까 쟁점이 된 299와 289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천정배 위원** 그것은 오늘 아침부터 간사 간에 협의해 가지고 각 당이 합의한 부분입니다. 오세훈 간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책임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식으로 표결을 해서 각 당간의 합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박종희 위원** 지금 간사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천정배 위원** 아니, 간사회의가 문제가 아니라 간사가 각 당의 수권을 받아 와서 각 당을 대표

해 가지고 각 당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지금 289명 안과 299명 안의 가부를 물어야 이 번안을 일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희 위원** 위원장님은 표결 안 하십니까?

○**원희룡 위원** 위원장님도 의사 표시를 하셔야지요.

○**委員長 李在五** 위원장도 표결할 수 있습니까?

○**천정배 위원** 할 수 있는데 안 하셨으니까 위원장님이 기권하신 것이지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제가 표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은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되고 의장님은 행사가 안 되는데…… 그러나 위원회는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위원장님이 “가부 동수이기 때문에 부결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썩 쪽에다가 의사 표시를 하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은 가부 동수 표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얘기를……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아닙니다.

○**천정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는 위원장께서도 표결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부 동수면 가부 동수를 따지기 전에 위원장께서 표결에 참가하실지 안 하실지를 결정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쪽에 기립을 하시면 되고 반대하시면 반대 쪽에 기립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찬반 어느 쪽에도 기립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기권한 것이지요. 기권했다면 기권된 것으로 처리해서……

○**委員長 李在五** 기권이 아니라 위원장은 가부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천정배 위원** 관례상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가부를 표시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가만히 앉아 계셨으니까 기권하신 것이고, 전체 표 중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 안 되고……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원 정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표결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결 처리하려고 몇 개월 동안 협상을 끌어 왔습니까?

○**심규철 위원** 정수를 동결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늘리자니까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천정배 위원** 귀당의 간사께서 당의 수권을 받아 가지고 같이 합의한 일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박종희 위원** 지금 여기서 합의가 안 되니까 일단 표결을 하고, 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왜 열린우리당 잣대로만 보십니까? 위원장이 찬반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단니까 기권한 것으로…… 본인은 기권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겨 가지고 기권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천정배 위원** 아니지요. 가만히 있었으니까 기권이지요. 지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열린우리당 간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을 대표해서 다른 교섭단체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끼리 합의한 바를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심규철 위원**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전혀 주지가 안 되었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것은 간사와 여러분 당 내에서 해결할 문제예요.

○**委員長 李在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3분 회의중지)

(22시4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在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안에 대해서 찬반은 거의 물었습니다. 이제 정식 번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번안은 국회법 제91조제2항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번안 세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정수 299명”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 표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박수)

회의장에서는 박수 치는 게 아닙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대상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로 한다.”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아까 찬성했는데 이것은 번안에 대한 정식 절차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으로……

○**천정배 위원** 지금 번안을 따로 따로 표결하는 것입니까?

○**委員長 李在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은 빨리빨리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 표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후보자가 지하철역 등에서 자신의 명함을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한 장소에서 나눠 주는 행위는 제한한다.”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 표결)

지금 이것은 3당 간에 합의를 다 한 거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표결하고자 합니다.

(기립 표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후보자 등록 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벌금형 이상’을 고지하게 되어 있는 것을 ‘금고형 이상’으로 하자고 아까 찬성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정식 번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립 표결)

(「3분의 2가 안 되잖아?」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아까 찬반으로 다 한 것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번안에 대한 절차를 맞추어서 할 때에는 다 찬성해 주셔야지 ‘의원 정수 299명’ 이 부분은 하면서 나머지는 자기 이해에 따라서 또 반대하고…… 이렇게 하면 합의정신에 되겠습니까?

○**천정배 위원** 간사 간에 합의가 된 내용이 아니에요.

(「다시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在五** 천정배 위원님, 지금 당장 민주당 항의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의정신을 무시하면……

○**천정배 위원**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사 간에 합의한 바는 충실히 지킵니다.

○**劉容泰 議員** 아까 내가 확실하게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의원 정수 299명’ OK 했는데 사안별로 여기에서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렇게 하면……

○**천정배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간사 간의 합의에는 ‘벌금형’을 ‘금고형’으로 바꾼다는 안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의 해 주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五** 아까 찬반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말로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서 위원장이 이렇게 의결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당리당략으로 자기네들이 유리한 건 찬성하고, 불리한 건 반대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게 뭐하는 겁니까? 합의정신 존중해 준다고 그래서 의원 정수부터 하는데, 그럼 일괄적으로 다 해서 번안을 통과시키지 왜 하나하나 제가 묻겠습니까?

번안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가 또 문제가 있을까 봐 정수에 대해서 큰 줄기를 합의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안에 대해서 다 합의하는 것으로 알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 당이 유리한 거는 합의하고, 불리한 거는 반대하고 이렇게 하면 정개특위의 합의정신이 살겠어요?

○**천정배 위원** 표결하세요.

○**委員長 李在五** 아까 제가 찬반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찬성이 우세한 부분을 번안으로 만들어서 정식 의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절차를 따져서 하면……

○**李方鎬 委員** 그냥 진행합니다.

○**委員長 李在五** 민주당에서 이견을 제시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의화 위원** 지금 이 정신이 맞는 것이에요? 천 위원님, 보십시오. 아까 우리는 정수 문제 말고는 다 동의가 된 거 아니에요?

○**천정배 위원** 아까 동의가 된 게 아니에요.

○**정의화 위원** 아까 과반수로 다 된 거 아니에요?

○**천정배 위원** 간사 간에 합의한 부분은 번안에 정식으로 유인물 상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금고형’으로 고치는 문제는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된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합의된 부분은 충실하게 그 합의에 따라, 당론을 따라 표결할 것입니다.

○정의화 위원 천 위원, 여태까지 정개특위에서 한 것 모두…… 간사 간에 합의된 것, 가지고 와서 논의한 것 그것을 다시 다 할까요?

○천정배 위원 그런 판소리 하지 마시고 합의된 거, 정확하게 합의정신을 존중하기 위해서……

○委員長 李在五 천정배 위원님, 위원장의 말을 잘 들으세요.

제가 이때까지 참고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하려고 끝까지 끌고 왔는데, 아까 찬반을 물은 것은 전문위원이 자구와 체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찬성이 더 우세한 것은 찬성하는 것으로 다 정해 놓고 ‘의원 정수 299명’만 합의되면 나머지는 번안으로 해서 다 처리하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표결 들어가는데 일일이 반대하면 전부 무효, 다시 해야지요.

○천정배 위원 아까 표결할 때도 저는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태도를 바꾼 게 전혀 없거든요?

○委員長 李在五 한나라당 위원들이 289명 찬성했다가 왜 299명에 전부 일어서서 찬성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299명에 찬성 안 하지요. ‘3분의 2’라는 이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289명에 찬성했던 한나라당 위원들이 299명에 다 일어난 것 아닙니까?

○李方鎬 委員 천 위원, 협조해 주세요.

○정의화 위원 천 위원, 협조 좀 해 줘요.

○委員長 李在五 천정배 위원님, 소탐대실하지 마십시오. 이 뒤에 “국회의원 지역구 통합·조정 및 분구 등 선거구 확정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함.”에 한나라당 위원들이 찬성하겠습니까? 이것이 3분의 2가 안 되어 부결 되면 오늘 본회의에 전부 못 넘어가지요.

○천정배 위원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제가 이보다 더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천정배 위원 합의된 부분은 합의를 존중합니다.

○정의화 위원 천 위원이 이때까지 말장난한 거 전부 다 참았어요. 이번에 대정부질문 때 하신 말씀도 내가 들을 때는 앞뒤가 항상 바뀌었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천정배 위원 정 위원,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委員長 李在五 회의장 정리하겠습니다. 관계

자 외에 다 나가 주십시오.

정개특위 위원장이 마지막 날 11시까지 참고 진행하는 거예요.

○천정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개별적인 사안으로 할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어요. 정개특위가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잘 와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번안을 간사 간에 다시 합의해서 만들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를 표결해서 찬반으로 결정……

○委員長 李在五 천정배 위원님, 지금 언제 간사 간에 합의해서 이것을 다시 만듭니까? 지금 다 읽은 건데요.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이 안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최종 표결하면 우리가 찬성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자, 들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의결한 것 이외에 나머지 의결이 세 가지입니다.

“후보자 등록 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행 유지입니다.

그다음 “국회의원 지역구의 통합·조정 및 분구 등 선거구 확정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함(별표 1).”, 그다음 기타 부칙은 번안대로 하고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천정배 위원 이미 반대 표결을 한 바 있지만 저는 한 의원으로서 한번 반대했던 것을 양심을 꺾고 다시 소신과 달리 투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11시가 되었고, 한 시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매우 개탄스럽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선거법의 통과를 여기서 무산시킬 수 없기에 협조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지금 의원 정수 투표할 때 289명에 찬성했던 한나라당 위원님들과 민주당 위원님들도 다 본인의 자존심과 소신을 꺾고 합의정신을 존중해서 299명에 일어서 준 것입니다. 각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행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등록 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고

형 이상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에게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입니다.

찬성하십니까?

(기립 표결)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원지역구의 통합·조정 및 분구 등 선거구 획정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번안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번안 [별표 1] 보셨지요?

이의 없으면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 표결)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기타 부칙은 번안대로 하고,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번안을 방금 말씀 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정치 개혁 입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위원장을 맡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활동하시기도 힘든데 많은 시간을 정치 개혁 입법을 위해 할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제껏 겪지 못했던 파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이 나라에도 금권선거 관권선거로 인한 구태가 사라지고 진정한 민심에 의해 뽑힌 선량들이 이 나라 정치를 잘 이끌어 나가 17대 국회에서는 이 나라가 기필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하지않습니다.

정치 개혁 입법과정 중에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정치력을 발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정치개혁특위 활동을 1년 4개월 남짓 뒷바라지해 준 정치개혁특위 직원들과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8분 산회)

○出席委員(20人)

권영세	金聖順	김성호	金學元
金孝錫	박종희	손희정	심규철
오세훈	원희룡	유시민	李方鎬
이병석	李在五	張誠源	全甲吉
정의화	정장선	천정배	黃昌柱

○委員아닌出席議員

劉容泰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수석전문위원	李昌熙
전문위원	安秉玉
입법심의회관	李秉吉

【報告事項】

○通知

선거구획정위원회보고서에대한통지

2월28일, 의장으로부터 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를 회부한다는 통지가 있었음